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방건축위원회 연임규정 정비 (안 제6조)

- 건축법에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기준에 맞게 위원 임기 규정 정비

○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막 포함 (안 제21조)

-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

○ 건축사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범위 및 대행수수료 기준 정비 (안 제22조, 안제23조, 안 별표3)

-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용도 변경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대행수수료 기준 정비

○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포함 (안 제35조)

-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

○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정비 (안 제36조)

-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되고,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(5회 이내)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9.8.8. ~ 2019.8.28.)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지원과-30516(2019.7.30.)]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7558(2019.7.29.)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「건축법」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

비점을 보완,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,

○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막을 포함하도록 축조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건축사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용도변경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포함하고,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,

○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,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5회 이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과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